

**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·운영규정
일부개정**

기 관 명	과학기술정보통신부
연 월 일	2025. 4. 29.

1. 개정이유

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제재처분재검토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
공정한 심의기회 확보를 위해 서면심의 가능요건, 재검토요청자의 재검토
심의 연기 요건 및 횟수를 제한하는 사항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서면심의 대상 관련 규정(안 제10조 제2항)

나. 제재처분재검토회의 일정연기 관련 사항 규정

(안 제11조 제2항 후단 신설, 안 제11조 제4항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지 서식

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·운영규정 일부개정

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·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 중 "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"를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집이 어려운 경우
2. 재검토요청자가 해외출장, 생계유지, 질병, 부상 등 부득이한 사정
으로 서면 개회를 요청한 경우
3. 재검토요청자가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제재처분
재검토회의의 개최 일시 및 장소에 불출석 한 경우
4. 그 밖에 위원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

제11조제2항 중 "경우"를 "경우 1회에 한하여"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재검토요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일정변경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1조제3항 후단 중 "중앙행정기관"을 "재검토요청자와 중앙행정기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제3항에 따라 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연기를 통보받은 재검토요청자는 연기된 제재처분재검토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의견 및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.

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·운영규정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제33조 및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(이하 "령"이라 한다)제61조에 따라 설치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원회의 설치)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제3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.

1. 연구자 권익보호 및 연구 부정방지에 관한 사항
2. 제재처분의 적절성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에 관한 사항
3.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4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조(위원회의 위원장)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영 제61조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, 다음 각 호 회의의 위원장이 된다.

1. 연구자 권익보호 및 연구 부정방지에 관한 회의(이하 "연구자권익보호회의"라 한다)
2.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를 위한 회의(이하 "제재처분재검토회의"라 한다)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재처분재검토회의에 관하여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제재처분재검토회의마다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위원이 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1. 영 제6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
2. 영 제6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(이하 "장관"이라 한다)이 지명하는 위원

제5조(위원의 임기) ① 영 제61조제2항제1호, 제2호,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(이하 '민간위원'이라 한다)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② 영 제6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(이하 '정부위원'이라 한다)의 임기는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.

제2장 연구자권익보호회의

제6조(검토사항의 제안·발굴) ① 위원회 위원은 제3조제1호, 제3호, 제4호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를 연구자권익보호회의에

상정할 수 있다.

제7조(연구자권익보호회의의 구성) ① 연구자권익보호회의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.

② 연구자권익보호회의의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연구자권익보호회의의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검토사항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7명 이내의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제8조(연구자권익보호회의의 운영)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자권익보호회의의 개최 전에 연구자권익보호회의의 위원으로 하여금 미리 회의에 상정할 자료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.

② 연구자권익보호회의의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.

③ 장관은 연구자권익보호회의의 개최를 지원하고, 연구자권익보호회의의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·추진하고, 위원회 및 위원회 회의 운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3장 제재처분재검토회의

제9조(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구성) ① 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제재처분재검토회의에 관한 직무를 대행하게 한 위원이 된다.

② 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제재처분재검토회의

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영 제61조제2항제1호, 제2호,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고르게 포함하여야 한다.

제10조(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운영) ① 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위원장은 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개최 전에 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위원으로 하여금 미리 회의에 상정할 자료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재처분재검토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.

1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집이 어려운 경우
2. 재검토요청자가 해외출장, 생계유지, 질병, 부상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면 개최를 요청한 경우
3. 재검토요청자가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개최 일시 및 장소에 불출석 한 경우
4. 그 밖에 위원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

③ 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위원장은 제재처분 사전통지 내용의 재검토 요청 의견에 대한 검토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재검토요청자, 이해관계인, 관련전문가 등이 제재처분재검토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증거물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④ 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위원장은 제재처분 사전통지 내용의 재검토 요청 의견에 대한 검토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에게 감정·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.

제11조(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일정 통지) ① 위원회는 재검토 요청 의견

에 대한 검토 사항의 소관 중앙행정기관 및 재검토요청자에게 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개최 일시 및 장소를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개최 일시 및 장소를 통보받은 재검토요청자는 제재처분재검토회의 일시의 연기를 희망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제재처분재검토회의 일시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재검토요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일정변경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개최 일시를 다시 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재검토요청자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최 일시의 연기 여부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라 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연기를 통보받은 재검토요청자는 연기된 제재처분재검토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의견 및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.

⑤ 제2항에 따른 연기로 소요된 기간은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12조(재검토 요청의 취하) 재검토요청자는 제재처분의 적절성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에 관한 위원회의 검토결과가 제재처분재검토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는 요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.

제13조(재검토 요청 의견에 대한 검토 범위) 위원회는 재검토 요청의

대상이 된 제재처분 및 그 원인이 된 사실 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14조(재검토 요청 의견에 대한 자료 보완 요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검토 요청 의견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0조 제3항에 따른 증거물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.

1. 제재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의 명확한 판단을 위하여 추가조사 및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
2. 새로운 사실관계, 검토가 누락된 사항 등이 발견된 경우

제15조(재검토 요청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통보) ① 위원회는 재검토 요청 의견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원회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재검토 요청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에 오기, 착오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정정하고 재검토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에 다시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6조(비밀유지 서약) 위원회 위원은 법 제39조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, 장관에게 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4장 보칙

제17조(간사)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

1. 위원회 검토 자료의 준비, 작성, 배부 및 결과 보고, 재검토 요청의
견에 대한 검토에 필요한 사실조사 등 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
2. 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한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

제19조(지원기관의 지정) 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한 관련 제도의 동향 등 조사·분석 및 제도개선, 정책개발 연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20조(재검토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현행	개정안
제10조(제재처분재검토회의 운영) ① (생략) ② 제재처분재검토회의는 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.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	제10조(제재처분재검토회의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----- -----. 1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집이 어려운 경우 2. 재검토요청자가 해외출장, 생계유지, 질병, 부상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면 개최를 요청한 경우 3. 재검토요청자가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개최 일시 및 장소에 불출석한 경우 4. 그 밖에 위원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・④ (현행과 같음)
제11조(제재처분재검토회의 일정통지) ① (생략) ② 제1항에 따라 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개최 일시 및 장소를	제11조(제재처분재검토회의 일정통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

통보받은 재검토요청자는 제재
처분재검토회의 일시의 연기를
희망할 경우 제재처분재검토회
의 일시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
다. <후단 신설>

③ 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위원
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이 타당
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재처분재
검토회의 개최 일시를 다시 정
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회는
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최 일
시의 연기 여부를 즉시 통보하
여야 한다.

<신 설>

④ (생 략)

----- 경우 1회에 한하여 -----

--. 이 경우 재검토요청자는 별
지 제1호 서식의 일정변경신청
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
서류를 첨부하여 제재처분재검
토회의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
야 한다.

③ -----

재검토요청자와 중앙행정기관

④ 제3항에 따라 제재처분재검
토회의의 연기를 통보받은 재검
토요청자는 연기된 제재처분재
검토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
술하거나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
면으로 의견 및 필요한 자료를
제출할 수 있다.

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